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 00. 공포, 2026. 2. 26.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제18조(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27조(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39조(결정의 공개),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주요내용

-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실 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위원회의 조사의 절차 및 방법,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 등이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위원회가 일정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위원회가 진실규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사.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될 경우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아.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예산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자. 위원회가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위원·직원 등을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법 제5조에 따라 1명 증원된 상임위원(차관급)의 정원을 공무원 정원표에 반영하도록 함(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

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
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
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실무협의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22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
별기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
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의2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제6조제2항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 관련)

총계	137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75
4급상당	7
5급상당	19
6급상당	38
7급상당	11
일반직 계	5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검찰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정보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5
검찰주사·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정보주사·수사주사·편사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
검찰주사보·행정주사보·수사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보	7
특정직 계	7
경정	2
경감	1
경위	3
경사	1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호	1,500	2,250	3,000

나.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 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2호	1,500	2,250	3,0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4 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 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500	750	1,000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6조제8 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3호	1,500	2,250	3,000
마.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 우	법 제66조 제2항제2호	500	750	1,000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 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3호	500	750	1,000
사.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500	750	1,000
아.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5호	400	600	900

[별지 서식]

(앞 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사 진

(2.5cm×3cm)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기 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0mm×90mm

(뒤 쪽)

제 호

앞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 명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7